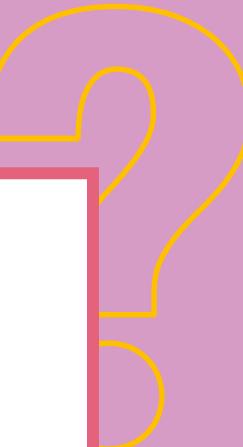


2021
공연예술분야
(무용)

인력지원사업

Q&A





Q1. 전년도 사업에 90일 이상 참여했을 경우 왜 지원이 불가능한가요?

→ 긴급 지원에 의한 사업인 만큼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한 많은 무용인에게도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 취지이며 국고 지원 인력사업 지침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장르(국악, 음악, 뮤지컬, 연극)에서 같은 사업(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대상자는 모두 해당합니다.

* 총사업참여기간 '90일이상'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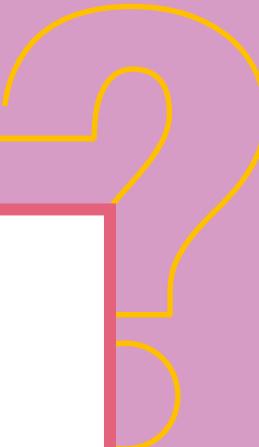
ex) 사업참여일 9월 1일 / 사업종료일 11월 30일 = 총 사업참여 기간 91일
에 해당하여 본사업의 예술인력으로 지원불가

Q2. 필요 인력은 최대 몇 명까지 신청 가능한가요?

→ 인력은 1단체당 최대 5명까지 신청 가능하며, 어떤 직무나 분야의 인원이 필요한지
작성 해주세요 합니다.

예) 공연 실연 2명, 공연 지원 3명 등으로 작성해서 신청

자주묻는질문 FAQ



Q3. 신청한 인력 모두 선발 가능한가요?

→ 단체 선정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단체
2인~5인

개인그룹
1인~3인

Q4. 단체와 개인그룹 둘 중 어디에 지원해야 하나요?

→ ① 단체 : 고유번호증이나 사업자등록증 소유자

② 개인그룹 :

-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 없이 개인 공연 또는 프로젝트를 하는데 필요한 인력을
구하려고 하는 개인그룹

- 적격 여부 검증을 통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부적격으로
분류될 수 있음. 과거에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을 소지했을 경우 사실 증명 혹은
휴·폐업 사실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개인그룹으로 신청 가능(휴 폐업증명서 미제출시 서류 미비로 탈락)



Q5.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전문무용수 등 정부 및 지자체 사업과 중복지원 가능한가요?

→ 아래와 같은 사업의 경우 지원이 불가능하거나 후순위로 선발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①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조금 받은 사업(프로젝트)의 경우 지원 불가
- ② 문체부에서 진행하는 공연작품 디지털 일자리 지원, 공연관광 디지털 일자리 사업,
대중음악공연분야 인력지원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
- ③ 2021년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 등의 사업으로 국가나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선정 심사를 통해 후순위로 선발



Q6. 선정된 예술인력은 어떤 방식으로 임금을 지불받나요?

→ 선정된 예술인력은 (사)한국무용협회와 4대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협회에서 예술인력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합니다.

Q7. 예술인력의 급여는 얼마인가요?

→ 명시된 180만원의 급여 내에는 4대보험료와 기관부담금(인력을 채용함으로써 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 수령액은 145만원 내외로 예상됩니다.



Q8. 예술인력은 선발된 단체나 개인그룹에서 선정이 가능한가요?

→ 네. 2020 공연예술분야(무용) 인력지원사업에 90일 이상 예술인력으로 참여했던 근무자를 제외하여 아래와 같이 채용절차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1

단체나 개인그룹에서 정한 선발 기준에 따라 필요 인력을 선정

2

협회에 인력에 대한 필수서류를 제출

3

(사)한국무용협회에서 적격성 (4대보험 가입이력 확인 등)검토

4

최종 승인 여부 통보

자주묻는질문 FAQ



Q9. 단체나 개인그룹의 대표자도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단체 대표: 지원 불가능

사업자 혹은 고유번호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예술인력으로 지원 불가능합니다.

→ 개인그룹 대표: 지원은 가능

지원은 가능하나 사업 취지를 생각해 가급적
예술인력을 고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진행 부탁드립니다.

(단, 전년도 2020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에
90일 이상 지원 이력이 있을 경우 지원 불가)

4대보험 관련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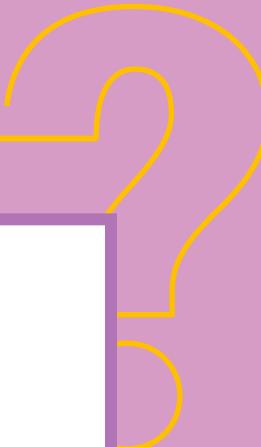


Q1. 이미 신청 단체에서 4대 보험에 가입 되어있는 사람도 인력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 공고일 기준(4월 19일) 1개월 이내 해당 단체에서 4대 보험(고용보험)이 가입된 이력이
있으면 예술인력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Q2. 단체 신청자 4대 보험 서류 관련

-
- 4대 보험 가입자가 있는 단체는 자료제출 시 10점, 미제출시 5점
 - 개인으로 신청의 경우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10점



Q1. 접수 후 수정 가능한가요?

→ **접수 후 수정 불가능합니다.**

수정을 원하실 경우 취소 후 접수 기간 내에 재접수 하셔야 되며,

접수는 (사)한국무용협회 온라인 접수시스템(d-apply.dlsol.co.kr)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Q2. 신청서는 어떻게 첨부해야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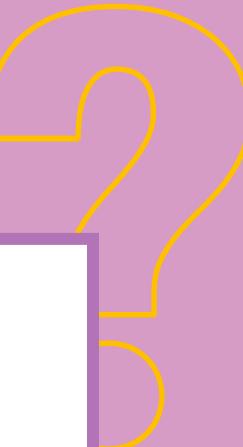
→ 신청서는 **한글파일 1부, pdf파일 1부 각각 업로드 해야 합니다.**

(증빙서류 - **고유번호증, 단체활동실적 등은 모두 신청서와 함께 하나의 파일로 작성하여 첨부**)

신청서 접수 여부는 문자로 발송되며 혹시라도 문자 미수신, 접수 완료 여부 확인을 원하시면
메일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dance21@koreadance.org)

단, 접수 마감 이후에 수신된 메일일 경우 회신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신청 및 접수관련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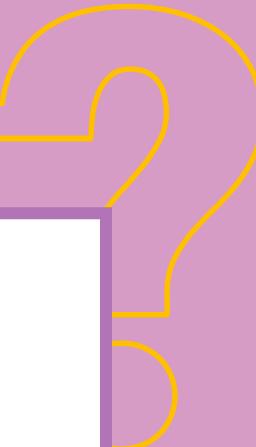
Q3. 개인그룹과 단체 둘 다 신청하려고 하는데 둘 중 어느 것으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개인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본인이 신청 가능한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Q4. 국, 공립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국, 공립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민간예술단체만 지원 가능합니다.



Q5. 신청서 마감은 언제까지 인가요?

→ 신청은 5월 3일 18시 정시에 마감됩니다.

※상기 일정은 협회 심의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Q4. 신청 마감 후 선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예술인력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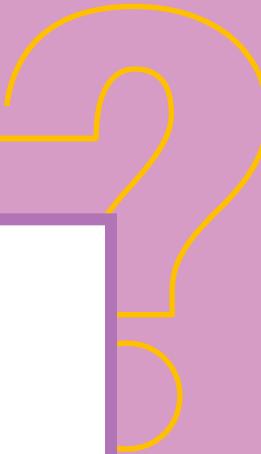
1
협회 측에서 5월 중 지원심의
및 단체/개인그룹을 선정하여 발표

2
6월 22일까지 선정된 단체 및 개인에서
필요한 인력을 선발 심사하여 채용후보자를 구성

3
시스템을 통해
해당 인력에 대한
자료 등록

4
적격 심사

5
최종 통보
(6월 22일 이후)



Q6. 사업설명회는 언제 진행되나요?

→ 4월 26일 (사)한국무용협회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하여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본 사업에 관심 있는 단체 및 예술인력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업설명회 일정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오니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바랍니다.

인력 선발 관련 질문



Q1. 공연지원(무용마케팅 등의 행정 인력)이 필요한데 꼭 무용과 졸업이어야 하나요?

→ 무용과 졸업이 아니더라도 신청은 가능하나, 본 사업이 무용 분야이므로 무용전공자 (대학교 무용학과 졸업 또는 재학)를 우선으로 선발합니다.

Q2. 인력 선발 시 지역에 제약이 있나요?

→ 아니요. 본 사업은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단위로 진행됩니다.

인력 선발 관련 질문



Q3. 예술인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본 사업에 지원이 불가능한가요?

→ 아니요. 예술인고용보험은 본 사업과 별개의 개념이므로 예술인력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Q4. 연습실을 미소유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단체인데 실연 인력을 뽑고 싶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예술인력의 근무시간 동안 근무(연습)할 공간이 필수로 존재해야 합니다.



Q1. 지원 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 최종 선발된 예술인력이 6월 30일 (사)한국무용협회와 근로 계약체결 후
2021년 7월 ~ 2021년 11월 까지 5개월간 지원을 받게 됩니다.

Q2. 진행해야 하는 공연이나 워크숍 횟수가 정해져 있나요?

→ 정해진 횟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단체에서 예정된 프로젝트가 11월 이전에 끝나게 된다면
남은 사업기간 동안의 계획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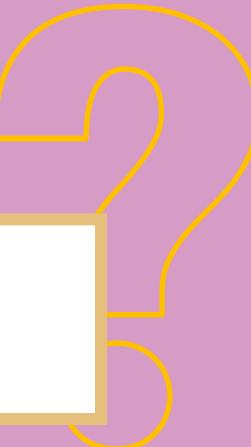
Q3. 연습실 관련 문의

→ 본인이나 단체 소유 또는 임차한 연습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혹은 대관확인증 등 연습실 사용에 대한 증빙이 가능한 서류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무상임대일 경우 역시 제출)

Q4. 선발 인력은 어떤 방식으로 출퇴근을 기록하나요?

→ 근태관리시스템을 통해 GPS 방식으로 출퇴근이 관리됩니다.

선정 후, 사업수행 및 근무 관련



Q5. 주 30시간 이내 근무는 어떤 방식으로 채우면 되나요?

가급적 매일 휴식시간 1시간을 포함하여
7시간(근무시간 6시간 / 주5일)을
근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공연이나 단체 행사 등(협회에서 인정
가능한 범위 내)이 있을 경우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합니다.
**(단, 사전에 협회에 그 내용에
대해 보고하여야 함)**

일 최대 근무시간은 11시간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근무시간 10시간
으로 제한됩니다.

Q5. 근무지가 중도에 바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근무지 변경 최소 1일 전까지 증빙자료 제출 및 협회로 사전 연락한 때에만 인정 가능합니다.
· 속한 단체의 행사나 공연의 경우만 근무지 변경이 인정됩니다.